

대구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나4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2. 11. 23.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2. 30. 선고 2013가단6359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와 C 사이에 2012년경 체결된 8,000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840만 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0만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가. 피고에게 소장부분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22. 3. 25.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다. 원고는 피고가 제1심 판결에 기재된 주소지인 '대구 서구 F건물, G호에 주민등록만 이전한 상태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도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에게 2012. 4. 15.부터 2012. 4. 25. 사이에 합계 84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은 위 대여금을 조만간에 갚아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을 어기고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소72467 사건), 법원은 2013. 5. 8. 'C은 원고에게 8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대구 달성군에서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2. 5.경 폐업하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공장 건물을 약 3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후 C은 2012년 일자 불상경 위 매각대금 중

8,000만 원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다. 위 공장 매각대금은 C의 유일한 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약정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C이 위 매각대금 중 8,0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위와 같이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피고는 E의 경리로 근무하여 C의 무자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마.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C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소72467 판결에 기하여 8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약정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나아가 E 공장이 C 소유의 유일한 재산이었는지 여부, C이 위 E 공장 매각대금 중 8,0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C이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E 공장 매각대금 중 8,0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서영애, 판사 김형태, 판사 박치봉